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(제 회)	

국 가 균 형 발 전 특 별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성윤모 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을 개정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·의결 등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,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, 도, 특별자치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함(제17191호, 2020. 4. 7. 공포). 이에 개정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동 개정안을 제안함.

3. 주요내용

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, 혁신도시의 개략적인 입지, 지역산업 발전 등 혁신도시 발전 전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혁신도시 발전 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.

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혁신도시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를 각각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로 하고,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혁신도시의 지정) ①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혁신도시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사항
2. 혁신도시의 개략적인 입지에 관한 사항(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후보 입지)
3. 지역산업 발전, 정주여건 개선,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등 혁신도시의 발전 전략에 관한 사항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혁신도시를 지정할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6조의2(혁신도시의 지정) ①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 <u>1. 혁신도시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사항</u> <u>2. 혁신도시의 개략적인 입지에 관한 사항(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후보 입지)</u> <u>3. 지역산업 발전, 정주여건 개선,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등 혁신도시의 발전 전략에 관한 사항</u> <u>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혁신도시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</u>
<u>제16조의2 ~ 제16조의5 (생 략)</u>	<u>제16조의3 ~ 제16조의6 (현행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와 같음)</u>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지역경제총괄과	
연 락 처	044-203-4419